

규정/REGULATIO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관련 항목: JEA, JEA-RC, JEA-RD, JEA-RE, JEB-RA, JEE-RA, JOA-RA
책임 맡은 사무실: 수석 학업 책임관(Chief Academic Officer)

학생 등록(Enrollment of Students)

I. 목적

Montgomery County Board of Education Policy JEA 거주지, 학비, 등록(*Residency, Tuition, and Enrollment*)에 제정된 Montgomery County 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학생을 결정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규정은 진정한 거주자와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에 등록할 자격이 있는 학생을 판단하는 절차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II. 정의

A. *실제로 거주하는 학생(Bona fide residence)*이란, 실제 또는 진실된 주 거주지가 실질적으로, Montgomery 카운티인 학생으로 필요에 의해 또는 MCPS 학교에 무료로 등록하기 위해 임시로 거주하는 학생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주지에서 무기한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의 실제 거주지 확인은 사실에 입각해야 하며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거주지를 증명할 증거가 없을 경우, 학생의 실제 거주지는 부모/후견인의 거주지입니다.

학생이 학부모/후견인과 따로 살고 있을 때라도 이를 증명할 다른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학생의 실제 거주지 즉 학생의 단독 친권을 갖고 있는 부모/후견인 또는 학생과 정기적으로 거주하는 부모/후견인의 실제 거주지를 실제 거주지로 추정합니다. 학생이 정기적으로 거주하는 곳을 결정하는 것은 상황 전체를 고려하여 사실에 입각한 분석에 따릅니다. 교직원 은 학생이 학기 중에 어디에 거주하는지와 친권 명령과 동의를 확인합니다.

해당되는 학생의 진정한 거주지는 부모/후견인의 거주지로부터 독립적입니다.

- B. 등록할 자격이 있는 학생(*qualified student*)이란 올해 9월 1일자로 만 5세가 되고 첫 등교일에 20세가 안 된 학생 시민권자 또는 비시민권자인 학생입니다.
- C. 자격 학생(*eligible student*)은 시민권자 또는 비시민권자로 성인 나이(18세)가 된 학생 또는 18세 이전에 친권으로부터 독립한 미성년자로 현 학사연도에 20세를 넘지 않는 학생입니다.
- D. 홈스쿨거주지에 따른 배정 학교(*Home school-거주지에 따른 배정 학교*) – 학생의 거주지에 따라 책정되는 학교 또는 학생이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에 따라 배정된 학교 홈스쿨 결정에 관한 정보는 MCPS Division of Capital Planning Office 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planning)

III. 배경

Montgomery 카운티 내에 부모/후견인이 거주 증명이 있는 학생(또는 section IV.B.에 제정된 바와 같은 자격이 있는 학생)은 다음 상황을 제외하고 모든 등록을 승인해야 합니다.

- A. MCPS 는 현재 다른 학교에서 퇴학 조치 또는 이에 동등한 기간의 정학을 받은 학생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B. 학생 등록은 학생의 기록에 제적의 기록이 없는지 확인될 때까지, 임시 등록 상태입니다.

IV. 학생 등록 절차

- A. 부모/후견인이 Montgomery 카운티 거주 증명이 있는 부모/후견인의 자격이 되는 모든 적격 학생은 IV.A.1. 와 IV.A.2 에 책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지에 따른 홈스쿨에 등록하게 됩니다.
 - 1. MCPS 연합학군(*consortium*) 지역이 주소지인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은 MCPS Consortia 사무실을 통한 초이스 지원과정에 따라 배정된 학교에 등록해야 합니다. 초이스 절차에 관한 정보는 Division of Consortia Choice 와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Application Program Services)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school choice)

2. 9월 1일자로 7세 이상이 되는 학생으로 미국 내의 학교 또는 미국 학교 시스템(예: Department of Defense schools 또는 외국의 승인된 American International school)에 과거 2년간 계속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국제 입학 및 등록사무실(International Admissions and Enrollment-IAE)로 연락을 해야 합니다. 이 학생의 등록은 MCPS Regulation JEA-RC, *외국에서 온 학생의 등록과 학교 배치(Enrollment and Placement of International and Foreign Students)*에 따릅니다.
 3. 학교장/대리인은 모든 학생을 거주지에 따른 지정 학교에 추천해야 하며, 배정 학교 외의 학교에 등록하고 싶을 경우, 적절한 경우, MCPS Regulation JEE-RA, 학생의 전학과 행정적 배치(*Student Transfers and Administrative Placements*)에서 제공하는 전학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B. Montgomery 카운티 거주 증명이 있는 적격 학생은 모두 위에 명시된 IV.A.에 명시한 바와 같이 거주지에 따른 홈스쿨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 C. 거주지에 따른 홈스쿨에 등록할 학생의 상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적격 학생의 부모/후견인이 해당 학교 학군내에 구매한 집의 계약서가 등록 날짜부터 60일 이내에 구매가 종결된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등록한 날짜부터 60일 이내로 시작하여 앞으로의 기간으로 되어 있는 승인된 임대 계약서를 제공합니다.
 2. 적격 학생은 MCPS Regulation JEA-RD, *Enrollment of Homeless Student*에 명시된 홈리스인 학생 또는 비동반 홈리스 청/소년입니다.
 3. 적격 학생은 그룹홈, 위탁 가정 또는 Maryland 또는 Montgomery 카운티 사회복지 기관에 의해 Montgomery 카운티의 적절한 친척 양육 장소에 배치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MCPS Form 560-35, *Enrollment of a Child in Maryland State-Supervised Care and Transfers of Educational Records*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는,
 4. 적격 학생은 적절한 Maryland의 비공식 친척 양육 장소에 거주합니다.
 - a) 메릴랜드 비공식 친척 양육(Maryland Informal Kinship Care)은 가족의 심각한 어려움/하드쉽에 따라 결혼, 친등으로의 혈연관계인 Montgomery 카운티에 거주하는 친척이 양육하게 된 Maryland에 거주하는 학생에 적용됩니다.

- b) 친척양육에 해당하는 학생은 MCPS Form 334-17, *AFFIDAVIT: Children in Informal Kinship Care* 에 서명을 하고 학생과의 관계 증명과 가족의 심각한 어려운/하드쉽 증명과 함께 비공식 친척 양육을 해야하는 사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 c) Maryland Informal Kinship Care 에서의 심각한 가족의 문제/고충/하드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합니다—
- (1) 부모/후견인의 사망, 사망증명서나 다른 증명서류로 입증한 경우
 - (2) 부모/후견인의 심각한 질병, 의료 관계자의 소견이나 의료 관계자의 보고서 사본, 메모 또는 다른 증명서류로 입증한 경우
 - (3) 부모/후견인의 약물 중독, 치료 제공자 또는 부모/후견인이 제공한 서류 또는 다른 증명 서류로 입증한 경우
 - (4) 부모/후견인의 투옥, 구치소 또는 사법기관이 발급한 서류나 다른 증명서류로 입증한 경우
 - (5) 부모/후견인의 군복무, 군대에서의 명령서나 다른 증명서류로 입증한 경우, 또는
 - (6) 모든 법적 후견인의 공증된 서류, 법정에서의 서류, 소셜서비스에서의 서류 또는 다른 증명 서류에 기록된 바와 같이 부모/후견인으로부터 유기, 방치된 경우
- D. 18 세 미만의 적격 학생의 부모가 Montgomery 카운티의 실질적 거주자가 아니면서 법정이 지명한 비공식 친척 양육에 해당하지 않는 후견인과 함께 Montgomery 카운티에 거주하는 경우에 교직원은 MCPS Regulation JEA-RE, *Tuition Based Enrollment* 에 지정된 바와 같이 학비 면제를 결정하기 위해 IAE 에 상의해야 합니다.
- E. 학교장/후견인이 거주지에 따른 홈스쿨에의 직접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후견인은 IAE 에 상의를 하고 적절한 경우, 학생의 케이스를 IAE 에 위탁합니다.

- F. 학생이 등록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다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1. 등록절차 완수. 등록하는 학생은 등록 시 함께 참석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를 예외로 합니다 —
 - a) 학교장/대리인이 참석을 면제할 경우. 또는
 - b) 학생이 MCPS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MCPS 내의 다른 학군에서 전학 올 경우
 2. MCPS Regulation JOA-RA, *학생기록(Student Records)에 관한 기록을 적절하게 책정합니다.*
 3. MCPS Regulations JEB-RA, *Placement, Promotion, Acceleration, and Retention of Students* 와 JEA-RC, *Enrollment and Placement of International and Foreign Students* 에 따라 학생의 학년과 반 배정을 합니다.

V. 등록 서류

- A. Board Policy ACA, *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 에 따라, MCPS 는 시민권 자격에 따른 차별이 없으며 시민권 자격에 관한 정보를 수집 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B. 실제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것은 학부모/후견인 또는 적절한 경우, 해당 학생에게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록은 거주 추정을 증명하는 기록입니다만 MCPS 가 모순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경우, 이 추정 증거는 반박될 수 있습니다. 거주 증명 외에 MCPS 는 시작하는 학년과 학교 내에서 거주지 증명을 위한 활동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 C. 학생 가족이 MCPS 에 재학 중이며 MCPS 내의 다른 학교로부터 등록하는 학교에 전학할 경우, 부모/후견인은 새 학교 지역의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 D. MCPS 학교에 처음 등록할 경우 또는 MCPS 학교에서 퇴교한 후 다시 등록할 경우, 학부모/후견인/해당할 경우, 학생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MCPS 양식 560-24 *전학생 정보(New Student Information)*와 MCPS 양식 565-1: *학생 기록 요청 및 양도 허가서(Student Records)*을 작성해야 합니다.
2. 학생이 홈리스 학생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a) 학생의 이름과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증명서로는 출생증명/Birth Certificate, 여권/비자, 의료진이 발행한 증명서/Physician's Certificate, 세례 증명서/Baptismal 또는 교회가 발급한 증명서 Church Certification, 병원에서 발급한 증명서/Hospital Certificate, 부모의 선서 진술서/Parent's Affidavit, 출생신고서/Birth Registration, 기타 법적 또는 공증받은 증명서)
 - b) 학부모/후견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증명서로는 운전 면허증, 여권, 차량국이 발급한 증명서/Motor Vehicle Administration identification card 와 기타 법적 신분증)
 - c) 학부모/후견인의 학생과의 관계 또는 학생의 양육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증명서 부모가 명시된 출생증명, 법원 명령, 별거 동의서 또는 이혼 판정 또는 기타 법적 증명서)
 - d) 예방접종 증명
 - (1) 해당하는 서류는 Maryland Department of Health (MDH) Form 896, *Maryland Department of Health Immunization Certificate*, 또는 의료기관이나 보건 크리닉이 제공한 컴퓨터로 제작한 서류
 - (2) 가족의 종교적 신념이나 관례에 따라 예방접종을 거부할 경우 MDH Form 896 을 작성합니다.
 - e) 거주 증명
 - (1) 집 소유주(현재 재산세 용지:property tax bill 을 제출)
 - (2) 임대자
 - (a) 현재 임대 계약서(rental lease)를 제출합니다.

- (b) 임대 계약서의 오리지널 계약 기간이 지난 경우, 현재 내고 있는 공과금 청구서의 사본 또는 연장 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3) 공동 거주

학부모/후견인/해당할 경우 학생이 집주인 또는 MCPS 학군에 실제 임대인과 거주하는 경우, MCPS Form MCPS Form 335-74, *공동 거주(Shared Housing Disclosure)*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a) 위의 V.D.2.e)(1) 또는 (2)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거주를 증명하기 위해 학부모/후견인/해당할 경우 학생과 함께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 또는 임대자는 MCPS Form 335-74 를 작성해야 합니다.

- (b) 부모/후견인/해당할 경우 학생이 Montgomery 카운티의 공립학교에의 등록만을 위해 거짓으로 거주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MCPS Form 335-74 의 진술에 서명하고 공증을 받습니다.

- (c) 부모/후견인이 이 주소에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빙 서류, 세 종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의 예는 MCPS *학생 기록과 보관 매뉴얼(Student Record Keeper Manual)*과 MCPS Form 560-24B, *Quick Guide to Enrollment* 에 있습니다. 작성 후 서명하고 공증된 MCPS Form 335-74 은 제출해야하는 주소 증명 세 개 중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4) 학부모/후견인/해당 학생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교직원 또는 학생 담당관(Pupil Personnel Worker)이 가정을 방문하여 거주를 증명하기 위해 MCPS Form 560-34, *Documentation of Residency Through Home Visit* 를 작성하고 이 서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VI. 이의제기 절차

Board Policy JEA, *Residency, Tuition, and Enrollment* 에 따라, 거주 증명에 관한 학교장의 이의제기의 결정은 MCPS Regulation KLA-RA, *Responding to Inquiries and Complaints from the Public* 을 따라야 합니다.

다음 절차는 거주와 위기 상황 결정에의 이의제기에 적용해야 합니다:

- A. IAE 는 개학이 된 후에 학생이 학교 출석을 기다리고 있을 경우, 이의제기 절차에서 신속한 결정을 돕게 됩니다.
- B. 학부모/후견인이 학생이 이의제기 절차 기간 동안 학교에 다니기를 희망할 경우, MCPS Regulation JEA-RE, *Tuition Based Enrollment* 에 따라 일 년 학비 중 10% 지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MCPS Form 335-73A, *Request to Enroll Nonresident, Tuition-Paying Student* 를 작성해야 합니다. 첫 결정이 번복되거나 조정될 경우, 학비의 전체 또는 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Annotated Code of Maryland*, Education Article, §7-301, §7-305, and §7-403;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13A.02.06.02, Definitions, §13A.02.06.03, State Financial Assistance under the Foundation Program, §10.06.04.03, Required immunizations, §10.06.04.05, Religious exemptions; *MCPS Student Record Keeper Manual*.

규정변경사: 이전 규정 355-3 와 JEB-RA 의 일부분을 1987년 8월 26일 새 규정으로 분리하여 책정함; 1995년 5월 2일 갱신; 1996년 10월 4일 갱신; 1997년 6월 27일 갱신; 2001년 7월 6일 갱신; 2005년 3월 10일 갱신; 2008년 2월 6일 관련 자료 추가; 2015년 7월 29일 갱신; 2018년 9월 24일 갱신; 2019년 10월 10일 관련자료 추가.